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5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국 가 보 훈 부
금 융 위 원 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2025. 7.

정 무 위 원 회

목 차

I . 소관부처 회부 추가경정예산안	1
II . 심사결과	1
III .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
IV .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4
V . 대체토론의 요지	69
VI .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69
VII . 찬반토론의 요지	69
VIII . 심사결과	70
IX . 소수의견의 요지	70
X . 부대의견	70
※ 첨부	76

(2025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7.
정무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추가경정예산안

1. 국가보훈부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출

2. 금융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세출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년 6월 23일

2. 회부일자 : 2025년 6월 23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6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2025. 6. 3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6. 30.)

(상정·심사)

-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7. 1.)

(상정·심사)

• 제2차 정무위원회(2025. 7. 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

Ⅲ.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국가보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 국가보훈부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1차 추경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보훈단체운영 및선양활동등,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국립서울현충원 등 15개 사업의 증액분 및 국립묘지조성 사업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2025년도 본예산(=1차 추경안) 대비 834억 2,900만원(1.3%)이 증액 편성(6조 3,214억 6,400만원→6조 4,048억 9,300만원)되었음.

<2025년도 제2회 국가보훈부 소관 추경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안(B)		
□ 세입예산안	10,027	10,082	10,082	-	-
○ 일반회계	9,851	9,861	9,861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7	67	67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9	154	154	-	-
□ 세출예산안	6,271,764	6,321,464	6,404,893	83,429	1.3
○ 일반회계	6,256,190	6,309,226	6,392,655	83,429	1.3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259	9,854	9,854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15	2,384	2,384	-	-

(자료: 국가보훈부)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25년 제1회 추경과 같은 1,011억원이며, 세출예산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총 3개 사업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5년 제1회 추경 대비 1조 1,004억원(24.1%) 증가한 5조 6,707억원임.

<2025년도 제2회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	2025년			증감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B-A)/A
□ 세입예산안	896	1,011	1,011	1,011	-	-
○ 일반회계	896	1,011	1,011	1,011	-	-
□ 세출예산안	40,030	41,838	45,703	56,707	11,004	24.1
○ 일반회계	40,030	41,838	45,703	56,707	11,004	24.1

(자료: 금융위원회)

I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국가보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증액)

가.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은 16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및 보훈단체별 특성에 맞는 애국선양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순국선열과 호국장병의 유지를 계승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려는 사업으로,¹⁾ 2025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8억원(2.3%)이 증가한 350억 8,1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사업 추경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안(B)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등	35,120	34,281	35,081	800	2.3
보훈단체 선양활동 등	5,931	5,031	5,831	800	15.9

(자료: 국가보훈부)

□ 추경안은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선양활동 등’ 중에서 “광복회”의 선양활동을 지원하는 내내역사업인 ‘광복회 선양 행사’ 사업에 8억원을 증액하기 위한 것으로, 광복회 산하의 학술원이 독립유공자 학술연구, 독립운동 인재양성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됨.

1) 세부사업: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1238-315)

- 동 사업은 2024년 보조금 지원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6억원의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5년에는 해당 사업이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고, 국회정무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 동 사업의 예산을 6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최종 예산안 확정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음.

나. 검토의견

-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은 ① 학술연구 지원, 학술대회 개최 등을 수행하는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 ② 학술원 계간지 및 각종 독립운동 관련 문헌을 발간하는 발간사업, ③ 학술콘텐츠 DB구축 및 독립운동가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콘텐츠 사업, ④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인재양성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복회는 산하 연구기관인 “광복회 학술원”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광복회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 개요 >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액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사업	학술연구 발표, 컨퍼런스 사업, 독립운동 논문·연구 지원, 신진연구자 발굴 학술대회 등	350백만원
독립운동 학술지 &문헌발간사업	학술원 계간지 발간(“THE 광복”), ‘독립운동사’ 다국적 언어 출간 사업 등	100백만원
교육&홍보 미디어콘텐츠사업	학술콘텐츠DB구축, 개별 독립운동가 영상물 제작, 독립운동가 후손 콘텐츠 제작 등	150백만원
후손 독립운동 인재양성 사업	청년 헤리티지 아카데미, 후손참여 독립영웅 아카데미 등	200백만원

(자료: 국가보훈부)

< 광복회 학술원 개요 >

- ☐ (연혁) 2024년 6월 17일 개원
- ☐ (설립목적) 독립운동사 연구의 센터 지향과 역사문제 선제적 대응, 민족정기 선양사업 및 역사 관련 유권해석 제공
- ☐ (조직) 원장 1인, 연구팀장 1인, 행정보조 등 1인

(자료: 국가보훈부)

- ☐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5년도 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광복회가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인데, 독립정신의 보존·계승을 위하여 독립운동사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은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추경안을 통한 지원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다만, 동 사업의 수행 기간, 규모 및 주요 사업(학술연구, 계간지 발간, 아카데미 교육 사업 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해당 보조사업은 집행 효율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보조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동 사업의 추경안 집행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조사업은 실질적으로 약 5개월 내에 수행이 완료되어야 할 것인데, 추경예산 편성금액은 2024년도 연간 보조금 대비 2억원(33.3%)이 증액된 8억원으로, 해당 금액이 2025년도 하반기만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집행이 연내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보훈부의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²⁾ 등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2025년도 상반기가 이미 경과하였으며, 추경예산의 사업 집행계획 등을 고려할 때 보조금이 실제 교부되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 7월 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전년 대비 2억원이 증가한 보조금을 약 5개월만에 집행하여야 할 것임.

< 광복회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 추경예산 집행계획 >

기간	집행계획
6월	추경 관련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접수
7월	학술원 사업 관련 제출 서류 검토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
7월~11월	광복회 학술원의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사업 수행
12월	사업 결과 검토, 정산 보고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동 사업의 2024년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학술연구사업, 계간지 발간사업, 아카데미사업으로 집행되었는데, 학술연구 사업은 6월·7월에 사업에 착수하였고, 아카데미 사업은 2024년 연중 진행되었으며, 상반기에 일정의 절반 이상을 소화하였음.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② 중앙관서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 그 밖에 연 4회 예정인 계간지(2024년 가을호, 겨울호 발간)는
현 시점 기준 이미 2회분(봄호, 여름호)의 발간 시기가 이미 도과
(봄호)하였거나, 발간 일정이 촉박한 상황(여름호)임.

< 2024년 광복회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 집행 실적 >

구분	금액	비고
학술연구사업	444백만원	· 연구보조 지원(6월~12월) · 논문공모 사업(7월~12월) · 독립영웅아카데미(5월~6월, 7월, 7월~12월)
계간지 발간	42백만원	계간지 가을호·겨울호 발간
교육&홍보미디어 콘텐츠사업	114백만원	청년헤리티지아카데미(연중)

(자료: 국가보훈부)

< ‘청년헤리티지 아카데미’ 및 ‘독립영웅 아카데미’ 집행 실적 >

청년헤리티지아카데미 강연		독립영웅아카데미	
날짜	주제	날짜	주제
5/18	로마사에서 배우는 한국의 미래 전략	3/9	인공지능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
6/1	한국 근대 정치사와 개혁 운동	4/13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와 정통성
6/15	대한 제국에 대한 인식과 재평가	5/11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관련 쟁점
6/29	박은식과 3·1 운동	6/8	역사적 책임과 기억의 의무
7/13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건국기원절	9/14	대한민국 미래발전을 위한 제언
7/27	일본 제국주의 침략사	10/12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이해
8/10	일제강점기 경제의 실상	11/9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AI활용
9/7	독립운동 사적지 현장체험 프로그램	12/7	국제질서의 대격변과 대한민국의 선택

(자료: 국가보훈부, 광복회 학술원 홈페이지)

- 따라서, 계획된 사업이 연내 집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
수행자인 광복회는 계획된 사업이 추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된
시기에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보훈부는 계획된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보다 주의깊게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2. 보훈병원 진료³⁾, 위탁병원 진료⁴⁾(증액)

가.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보훈병원 진료”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보훈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합·재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498억 4,200만원(12.7%) 증가한 4,421억 3,800만원이 편성됨.

□ 동 세부사업의 2025년 본예산은 ‘보훈병원 진료비’와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추경안은 이 중 ‘보훈병원 진료비’를 12.9% 증액 편성하였음.

< 2025년도 보훈병원 진료 사업 추경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제2회 추경안(B)		
보훈병원 진료	392,031	392,296	442,138	49,842	12.7
보훈병원 진료비	387,148	385,278	435,120	49,842	12.9
차세대 보훈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4,883	7,018	7,018	-	-

3) 세부사업: 보훈병원 진료(2150-365)

4) 세부사업: 위탁병원 진료(2150-366)

(자료: 국가보훈부)

□ “위탁병원 진료”는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국가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345억 7,300만원(13.9%) 증가한 2,836억 8,600만원이 편성됨.

□ 동 세부사업의 2025년 본예산은 ‘위탁병원 진료비’, ‘위탁진료관리비’, ‘우수위탁병원인증제’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추경안은 이 중 ‘위탁병원 진료비’를 14.0% 증액 편성하였음.

< 2025년도 위탁병원 진료 사업 추경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제2회 추경안(B)		
위탁병원 진료	256,315	249,113	283,686	34,573	13.9
위탁병원 진료비	253,932	246,715	281,288	34,573	14.0
위탁진료관리비	2,383	2,383	2,383	-	-
우수위탁병원인증제	-	15	15	-	-

(자료: 국가보훈부)

나. 검토의견

- 현행 보훈의료제도는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⁵⁾과 위탁병원⁶⁾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
- 신체적으로 직접 희생이 있는 상이유공자 등에게는 모든 질환 또는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이하 “국비 진료”)하고 있음.

< 2025년도 국비 진료 대상 현황 >

(’25.3월말 기준)

대상구분		대상인원(명)	진료범위	보훈병원	위탁병원	
					지정위탁	응급·통원
합계		246,130				
독립유공자		4	모든 질환	○	○	○
국가유공상이자		118,815	모든 질환	○	○	○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자	24,967	모든 질환	○	○	○
	등급미달자	32,947	해당 질환	○	○	○
경상이 제대군인(등급미달)		69,397	상이처(질환)	○	○	○

주) 고엽제후유의증은 후유증 2세도 포함

(자료: 국가보훈부)

- 무공·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 희생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보훈대상자에게는 본인 부담액의 30~90%를 지원(이하 “감면 진료”) 중임.

5) 보훈병원 : 전국 6개(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6) 위탁병원 : 전국 906개(2025년 5월 기준)

< 2025년도 감면 진료 대상 현황 >

('25.3월 말 기준)

보훈병원			위탁병원		
대상구분	대상인원(명)	감면율	대상구분	대상인원(명)	감면율
합계	1,448,789		합계	143,734	
참전유공자	78,516	90%	참전유공자	78,514	90%
무공·보국·공로자	39,571	60%			
국가유공자 유가족	1,272,483	60%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780	60%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발병자 포함)	53,086	50%			
기타5·18희생자 및 유가족	5,133	50%(본인) 30%(유족)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유족	64,440	60%

(자료: 국가보훈부)

□ “보훈병원 진료” 및 “위탁병원 진료”는 이러한 보훈의료체계 하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액을 편성, 집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올해 집행 상황을 고려할 때 발생이 예상되는 진료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되었음.

○ ‘보훈병원진료비’는 2025년 5월 말 기준 집행액이 2,35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61.0%에 이르고, ‘위탁병원진료비’의 5월 말 집행액 1,537억 1,500만원은 본예산 대비 62.3%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러한 집행 추이에 비추어 보면 각 진료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됨.

< 2025년 ‘보훈병원진료비’ 및 ‘위탁병원진료비’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2025년 본예산	2025년 5월말 집행액	2025년 5월말 집행률
보훈병원 진료	보훈병원 진료비	385,278	235,000	61.0
위탁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비	246,715	153,715	62.3

(자료: 국가보훈부)

□ 그런데, 이와 같이 본예산 편성의 오차⁷⁾를 보완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임에도, 추경안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예산 추계의 구체적 합리성 및 정확성이 여전히 다소 결여된 것으로 보임.

○ 정부는 ‘보훈병원진료비’ 및 ‘위탁병원진료비’ 내역사업의 올해 연말까지 예산 소요액(추경안)을 2023년 및 2024년 집행액의 평균으로 산정하였음.

< ‘보훈병원진료비’ 및 ‘위탁병원진료비’ 추경안 산출기준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3년 집행액 (A)	2024년 집행액 (B)	2년간 평균 집행액 ((A+B)/2)	2025년 추경안
보훈병원 진료	보훈병원 진료비	428,394	441,845	435,120	435,120
위탁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비	272,461	290,115	281,288	281,288

주) 2023년, 2024년 위탁병원진료비 집행액은 ‘위탁병원진료비’ 내역사업 집행액에서 심사위탁수수료(2023년 5억 2,600만원, 2024년 6억 3,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국가보훈부)

7) ‘보훈병원진료비’와 ‘위탁병원진료비’의 2025년 예산 부족액 발생 가능성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었음.

* 「2025년도 국가보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p. 95~101.

○ 그러나, 올해 4월 말⁸⁾ 기준 실집행액을 보면 ‘보훈병원진료비’는 2023년 대비 16.1%, 2024년 대비 7.9%가 증가하였고, ‘위탁병원진료비’는 2023년 대비 18.6%, 2024년 대비 11.3%가 증가한 상황으로, 2023년과 2024년 집행액의 평균으로 편성한 추정안은 연내 집행소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

< 2025년 ‘보훈병원진료비’ 및 ‘위탁병원진료비’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4월말 실집행액	4월말 실집행액	4월말 실집행액	2023년 대비 증가율	2024년 대비 증가율
보훈병원 진료	보훈병원 진료비	138,038	148,426	160,206	16.1	7.9
위탁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비	87,405	93,164	103,705	18.6	11.3

(자료: 국가보훈부)

□ 특히, ‘보훈병원진료비’ 및 ‘위탁병원진료비’는 해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대규모 이·전용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 간 괴리는 합리적·효율적 예산 집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8) 진료비 실집행액은 다음다음달에 정산이 완료되어 6월 현재 시점에는 4월 말 기준 실집행액까지 집계 가능함

< 최근연도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편성·집행액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월말)
보훈병원 진료비	본예산(A)	385,503	383,680	389,695	387,148	385,278
	집행액(B)	395,011	383,363	429,080	442,460	235,000
	과부족(A-B)	△9,508	317	△39,385	△55,312	-
위탁병원 진료비	본예산(A)	232,833	250,404	265,043	253,932	387,148
	집행액(B)	248,359	247,332	272,987	290,747	153,715
	과부족(A-B)	△15,526	3,072	△7,944	△36,815	-

(자료: 연도별 국가보훈부 제출 자료)

< 진료비 추계 부정확성에 대한 최근연도 국회 결산 지적 >

대상연도	지적요지	시정요구사항
2019결산	○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의 부정확한 추계로 의료지원 사업에서 매년 대규모의 이·전용·조정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병원 지정 확대 및 진료인원의 증가로 동 예산에 대한 증액이 필요함	○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조정을 통해서 편성액과 집행액 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탁병원 진료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주의)
2020결산	○ 지속적인 위탁병원 지정 확대, 대상자 연령 증가 등으로 진료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의 부정확한 추계로 위탁병원진료 사업에서 매년 이·전용 등이 반복되고 있음	○ 국가보훈처는 위탁병원 진료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진료비를 편성하여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할 것(제도개선)
2021결산	○ 진료단가 및 진료인원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여 지원금 부족에 따른 이·전용 등이 반복되고 있음 - 위탁병원 진료 사업에서 진료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2021년 155억원 이용, 2018년 296억원 내역변경 등 연례적인 이용·내역변경이 발생함	○ 국가보훈처는 적정 진료단가를 반영하고 진료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강화할 것(제도개선)

대상연도	지적요지	시정요구사항
2023결산	○ 국가보훈대상자 병원 진료비 보전금 규모 산정이 부정확하여 매년 과다한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고, 2023년의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모든 세부사업에서 부족한 진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연도말 증액 소요가 발생함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진료사업 예산편성 시 직전시점의 실적단가 반영 등을 검토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이·전용 등에 의한 예산 변경을 최소화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는 향후 의료지원 단위사업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진료인원과 진료단가에 대한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것(주의) ○ 국가보훈부는 향후 의료지원 단위사업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적정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할 것(주의)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발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추경 편성의 경우 보다 최근 시점의 집행 상황을 예산 산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급적 정확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경을 실시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다른 사업의 예산 집행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2년간 집행액의 평균액을 통해 산출한 추경안은 진료비 단가 상승⁹⁾, 위탁병원 지정 확대¹⁰⁾ 등 진료비 지출 환경 변화를

9) 보훈병원 진료 1인당 진료비 단가는 2022년 10만 2천원, 2023년 10만 9천원, 2024년 11만 5천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함

10) 전국 위탁병원 수는 2022년 말 582개, 2023년 말 702개, 2024년 말 892개, 2025년 5월 말 906개로 꾸준히 증가함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종합적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보훈병원 진료” 및 “위탁병원 진료” 사업의 진료비 지원 예산을 확충하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경 편성액 산출 기준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경 안의 적정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또한, 향후에도 연례적인 진료비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보훈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적정 규모의 진료비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3. 국립묘지 조성 및 관리

가.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단위사업인 ‘국립묘지조성및관리’는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묘지, 국립영천호국원 등 12개의 국립묘지¹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12개의 세부사업 및 신규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1개의 세부사업 등 총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¹²⁾

□ 추경안은 세부사업인 ‘국립묘지조성’의 내역사업인 ‘연천현충원조성’의 공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진척도를 감안하여 공사비 97억 2,4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12개의 국립묘지의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소규모 시설보수 공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시설보수공사’ 79억 3,800만원을 증액하는 지출구조 조정을 하려는 것임.

□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국립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연천현충원* *현재 조성공사 중
4. 국립4·19민주묘지
5. 국립3·15민주묘지
6. 국립5·18민주묘지
7.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 가. 국립영천호국원
 - 나. 국립임실호국원
 - 다. 국립이천호국원
 - 라. 국립산청호국원
 - 마. 국립괴산호국원
 - 바. 국립제주호국원
8. 국립신암선열공원

12) 단위사업 : 국립묘지조성및관리(3200) - 세부사업 : 국립서울현충원(3250-351),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3250-352), 국립대전현충원(3250-353), 국립4·19묘지(3250-354), 국립3·15묘지(3250-355), 국립5·18묘지(3250-356), 국립영천호국원(3250-358), 국립임실호국원(3250-359), 국립이천호국원(3250-360), 국립산청호국원(3250-361), 국립신암선열공원(3250-362), 국립괴산호국원(3250-363), 국립묘지조성(3250-364), 국립제주호국원(3250-367)

확대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음.¹³⁾

< 2025년도 ‘국립묘지조성및관리’ 사업 추경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2025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안(B)		
국립서울현충원	-	11,333	12,581	1,248	11.0
시설보수공사	-	4,271	5,519	1,248	29.2
국립대전현충원	16,320	11,352	13,134	1,782	15.7
시설보수공사	7,597	2,462	4,244	1,782	72.4
국립4·19묘지	616	622	861	239	38.4
시설보수공사	-	-	239	239	-
국립3·15묘지	555	560	647	87	15.5
시설보수공사	92	91	178	87	95.6
국립5·18묘지	1,502	1,422	1,685	263	18.5
시설보수공사	100	100	363	263	263
국립영천호국원	10,402	13,620	14,333	713	5.2
시설보수공사	696	696	1,409	713	102.4
국립임실호국원	11,560	4,557	5,232	675	14.8
시설보수공사	602	513	1,188	675	131.6
국립이천호국원	13,541	20,857	22,938	2,081	10.0
시설관리	245	245	2,326	2,081	849.4
국립산청호국원	9,334	2,701	2,774	73	2.7
시설보수공사	274	274	347	73	26.6
국립신암선열공원	704	708	808	100	14.1
시설보수공사	307	307	407	100	32.6
국립괴산호국원	7,604	4,501	4,628	127	2.8
시설관리	2,081	1,635	1,762	127	7.8
국립묘지조성	12,452	30,049	20,325	△9,724	△32.4
국립제주호국원	3,810	3,523	4,073	550	15.6
시설보수공사	144	146	696	550	376.7

(자료: 국가보훈부)

13)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부, 2025. 6.

- ① ‘국립서울현충원’ 사업의 2025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2억 4,800만원(11%) 증가한 125억 8,100만원이 편성됨.
- ② ‘국립대전현충원’ 사업의 2025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7억 8,200만원(15.7%) 증가한 131억 3,400만원이 편성됨.
- ③ ‘국립4·19묘지’ 사업의 2025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억 3,900만원(38.4%) 증가한 8억 6,100만원이 편성됨.
- ④ ‘국립3·15묘지’ 사업의 2025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8,700만원(15.5%) 증가한 6억 4,700만원이 편성됨.
- ⑤ ‘국립5·18묘지’ 사업의 2025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억 6,300만원(18.5%) 증가한 16억 8,500만원이 편성됨.
- ⑥ ‘국립영천호국원’ 사업의 2025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7억 1,300만원(5.2%) 증가한 143억 3,300만원이 편성됨.
- ⑦ ‘국립임실호국원’ 사업의 2025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6억 7,500만원(14.8%) 증가한 52억 3,200만원이 편성됨.
- ⑧ ‘국립이천호국원’ 사업의 2025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0억 8,100만원(10%) 증가한 229억 3,800만원이 편성됨.
- ⑨ ‘국립산청호국원’ 사업의 2025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7,300만원(2.7%) 증가한 27억 7,400만원이 편성됨.
- ⑩ ‘국립신암선열공원’ 사업의 2025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억원(14.1%) 증가한 8억 800만원이 편성됨.
- ⑪ ‘국립괴산호국원’ 사업의 2025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억 2,700만원(2.8%) 증가한 46억 2,800만원이 편성됨.
- ⑫ ‘국립묘지조성’ 사업의 2025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97억 2,400

만원(△32.4%) 감소한 203억 2,500만원이 편성됨.

- ⑬ ‘국립제주호국원’ 사업의 2025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5억 5,000만원(15.6%) 증가한 40억 7,300만원이 편성됨.

나. 검토의견

(1) 국립묘지 시설보수공사(증액)

- 추경안은 12개의 국립묘지의 안전 강화, 미관 개선 등을 위하여 소규모 시설보수 공사 32건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79억 3,700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별 시설보수공사 세부 내용 >

구분	사업 내용	편성액 (백만원)	기대효과
서울 현충원 (4)	광장 및 도로 바닥 포장 개선	652	안전 강화 및 환경 개선
	현충관 도장·방수 공사	220	내구연한 증진 및 만족도 제고
	제1층혼당 노후 승강기 교체	77	안전사고 예방
	안전 위험·노후 조경시설물 교체	299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증진
소계		1,248	
대전 현충원 (5)	둘레길 정비	201	산불예방 및 보안강화, 이용객 만족도 제고
	둘레길 안전 및 보안 강화 공사	715	
	원내 도로 주차장 포장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500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만족도 제고
	원내 건물 지붕방수공사	174	내구연한 증진 및 미관 개선
	보훈문무관 철거공사	192	사전적 안전 예방
소계		1,782	
국립4·19 묘지 (2)	기념관 옥상방수공사	55	안전확보 및 전시자료 훼손 방지
	민주쉼터 위험환경요인 개선 (의자·테이블 설치, 포장, 배수, 위험 수목 전지, 잔디 식재)	184	안전·환경 개선
	소계	239	

구분	사업 내용	편성액 (백만원)	기대효과
국립3·15 묘지 (1)	민주광장 바닥 안전공사	87	안전·환경 개선
국립5·18 묘지 (4)	제2묘역 배수 개선 공사	163	안장 기능 개선
	정문 옹벽 및 진출입로 보수공사	60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나무 뿌리 제거 및 재포장 공사	25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승모루 등 석재 시설물 보수 공사	15	안전사고 예방
소계		263	
국립영천 호국원 (2)	주차장 주변 절개지 추락방지 안전 데크 설치	468	안전하고 품격있는 국립묘지 조성
	원내 아스팔트 도로 재포장 공사	245	
소계		713	
국립임실 호국원 (2)	조경시설물 등 긴급 유지보수	145	안전하고 행복한 국립묘지 조성
	옹벽 보강 개선공사	530	경관개선
소계		675	
국립이천 호국원 (3)	산불예방 방화수림 조성	804	산불피해 사전적 예방
	노후화된 보도블럭 개선	367	환경 개선
	원내 관리도로 열선 설치공사	910	도로 빙결로 인한 사고 방지
소계		2,081	
국립산청 호국원 (2)	시설물 도장	55	미관 개선 및 이용 만족도 제고
	도로 차선도색 및 안전시설물 보수 (차선 도색 및 안내표지판 등 정비)	18	차량이용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
소계		73	
국립신암 선열공원 (1)	묘역 담장 보수 및 디딤석 설치	100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국립괴산 호국원 (3)	호국원 정문 보수	20	안전사고 예방 및 이미지 개선
	대형주차장 포장 균열 보수	18	주차장 내구성 확보
	옥상우레탄 방수공사	89	내구연한 증진 및 외관 개선
소계		127	
국립제주 호국원 (3)	관리도로 열선 설치	500	도로 빙결로 인한 사고 방지
	CCTV 추가 설치	25	시설물 보호 및 화재 예방
	야외 소화함 설치공사	25	시설물 보호 및 화재 예방
소계		550	
계 (32건)		7,937	

(자료: 국가보훈부)

□ 추경안은,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추경안 편성 방향에 맞추어,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이 짧고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

보수 공사를 증액하여 국립묘지 참배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이번 추경안의 편성 취지를 고려할 때,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는 공사의 조속한 추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공사가 적기에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 각 국립묘지의 시설보수 공사별로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거쳐야 할 행정절차 또는 허가가 필요한데, 과거 관련 절차 부진으로 공사가 적기에 수행되지 못한 사례에 비추어, 이에 대한 사전 검토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음.

- 동 추경안은 소규모 시설보수 공사를 중심으로 계획된 바, 소규모 공사의 특성상 사전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인 공사가 다수 있으나, 예상 공사 기간이 길거나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각 국립묘지의 시설보수공사 별 사전 행정절차 등 필요사항 >

구분	사업명	필요 행정절차 또는 허가	예상 공사 기간
서울 현충원	광장 및 도로 바닥 포장 개선	해당없음	60일
	현충관 도장·방수 공사	해당없음	60일

구분	사업명	필요 행정절차 또는 허가	예상 공사 기간
	제1층혼당 노후 승강기 교체	해당없음	60일
	안전 위험·노후 조경시설물 교체	해당없음	90일
대전 현충원	둘레길 정비	해당없음	60일
	둘레길 안전 및 보안 강화 공사	해당없음	90일
	원내 도로 주차장 포장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해당없음	60일
	원내 건물 지붕방수공사	해당없음	60일
	보훈문무관 철거공사	건축물 멸실신고 (약 15일 소요)	60일
국립4·19 묘지	기념관 옥상방수공사	해당없음	60일
	민주쉼터 위험환경요인 개선	해당없음	120일
국립3·15 묘지	민주광장 바닥 안전공사	해당없음	60일
국립5·18 묘지	제2묘역 배수 개선 공사	해당없음	120일
	정문 옹벽 및 진출입로 보수공사	해당없음	14일
	나무 뿌리 제거 및 재포장 공사	해당없음	7일
	승모루 등 석재 시설물 보수 공사	해당없음	7일
국립영천 호국원	주차장 주변 절개지 추락방지 안전 데크 설치	해당없음	60일
	원내 아스팔트 도로 재포장 공사	해당없음	30일
국립임실 호국원	조경시설물 등 긴급 유지보수	해당없음	150일
	옹벽 보강 개선공사	해당없음	120일
국립이천 호국원	산불예방 방화수림 조성	산지 전용허가 (약 15~20일 소요)	120일
	노후화된 보도블럭 개선	해당없음	120일
	원내 관리도로 열선 설치공사	해당없음	90일
국립산청 호국원	시설물 도장	해당없음	90일
	도로 차선도색 및 안전시설물 보수 (차선 도색 및 안내표지판 등 정비)	해당없음	90일
국립신암 선열공원	묘역 담장 보수 및 디딤석 설치	해당없음	60일
국립괴산 호국원	호국원 정문 보수	해당없음	30일
	대형주차장 포장 균열 보수	해당없음	30일
	옥상우레탄 방수공사	해당없음	30일
국립제주 호국원	관리도로 열선 설치	해당없음	120일
	CCTV 추가 설치	해당없음	30일
	야외 소화함 설치공사	해당없음	30일

(자료: 국가보훈부)

< 기존 시설보수 공사 중 이월 또는 불용 사례 (2022년~2024년) >

연도	구분	사업 내용	이월 또는 불용 사유
2022년	대전현충원	후문도로 확장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
2023년	대전현충원	후문도로 주차장 공사 관련	계획심의 지연으로 계약 체결 지연
	대전현충원	보훈미래관 리모델링 관련	계약 체결 지연으로 이월
	대전현충원	원내 보도블럭 등 시설물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매	공정율에 따른 이월
	3·15묘지	에스컬레이터 설치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지연에 따른 이월
2024년	서울현충원	상수도관교체공사감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
	대전현충원	보훈미래관 리모델링 관련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
	신암선열공원	경비실 설치	개발제한구역 관련 미허가로 불용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32건의 보수공사 중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가 동시에 계상되어 있는 12건은, 실시설계 용역이 선행되어야 후속 공사가 착공될 수 있어,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가 늦어질 경우 후속 공사의 착공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시설계 용역의 계약 체결 단계부터 전체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관리를 주의 깊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8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9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나, 9월부터 10월은 추석 명절 기간을 전후로 하여 참배객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하여 계획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가 동시 계상된 시설보수공사 추진 계획 >

구분	사업내용	'25년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광장및 도로 바닥 포장 개선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공사발주및계약	공사 착공	공사 계속	공사 준공	
대전	둘레길 정비 등 안전 및 보안 강화공사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공사발주및계약	공사 착공	공사 계속	공사 준공	
	원내 도로·주차장 포장 및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공사발주및계약	공사 착공	공사 준공	-	
	건물 지붕 방수공사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공사발주및계약	공사 착공	공사 준공	-	
	보훈문무관 철거공사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공사발주및계약	공사 착공	공사 준공	-	
4·19	민주쉼터 환경위험요인 개선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공사발주및계약	공사 착공	공사 준공	-	
5·18	제2묘역 배수 개선 공사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공사발주및계약	공사 착공	공사 계속	공사 준공	
영천	주차장 주변 절개지 추락방지 안전데크 설치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공사발주및계약	공사 착공	공사 계속	공사 준공	
	원내 아스팔트 도로 재포장공사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공사발주및계약	공사 착공	공사 계속	공사 준공	
임실	옹벽 보강 개선공사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공사발주및계약	공사 착공	공사 계속	공사 준공	
이천	산불 예방 방화수림 조성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공사발주및계약	공사 착공	공사 계속	공사 준공	
	노후화된 보도블럭 개선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공사발주및계약	공사 착공	공사 계속	공사 준공	
	원내 관리도로 열선 설치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	공사발주및계약	공사 착공	공사 계속	공사 준공	

(자료: 국가보훈부)

☐ 아울러, 국가보훈부 계획에 따르면, 추경안에 편성된 시설보수 공사는

대부분 9월부터 11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해당 시기에는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존 보수공사의 일부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

9월부터 10월 추석 명절 기간을 전후로 한 참배객 및 방문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본예산 시설보수 공사 중 9월 이후 진행 예정 공사 >

국립묘지	공사내용	기간
국립서울현충원(1)	상수도관 교체공사	5.30. ~ 12.9.
국립대전현충원 (6)	조경시설물 보수공사	9월 발주 예정
	건물 도장·방수공사	9월 발주 예정
	배수로 등 보수공사	3.24 ~ 11.18
	원내건물 기와 공사	6.4 ~ 10.12.
	보도블럭 등 시설물 정비공사	9월 발주 예정
	안내판 등 시설물 보수공사	9월 발주 예정
국립이천호국원(1)	현충관 및 관리소 리모델링	1.13. ~ 9.25.
국립신암선열공원 (4)	화단암석원, 전시실 설계 및 리모델링, 하반기 시설물유지관리공사, 묘역 스피링쿨러 설치	9월 발주 예정
국립괴산호국원(1)	소규모 보수공사	9월 발주 예정
국립제주호국원(1)	소규모 보수공사	10월 발주 예정

(자료: 국가보훈부)

- 이상을 종합하면, 12개의 국립묘지의 소규모 시설보수 공사비를 증액하는 추경안은, 사업 추진 측면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라는 추경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되, 시설보수 공사로 인하여 추석 명절 전후 참배객의 국립묘지 이용에 불편에 초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국립묘지조성(감액)

- ‘연천현충원조성’은 국가유공자 등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 여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지역별 접근성을 감안하여 경기 북부에 신규 국립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작된 사업임.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개요 >

- 사업시행주체 : 국가보훈부
- 사업부지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 120번지 외 957,500㎡(29만평)
- 연면적 : 16,576㎡(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기간 : 2019년 ~ 2027년(9년)
- 주요시설 : 50,000기 규모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봉안당 2만5천기, 봉안담 2만기, 자연장 5천기)
- 총사업비 : 1,286억원(2019년 980억원 → 2022년 1,020억원 → 2024년 1,263억원 → 2025년 1,286억원)

(자료: 국가보훈부)

- 동 내역사업의 공사 추진 일정의 변경 과정을 살펴보면,
- ① 최초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게 되면서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공사 착공도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2024년부터 2026년으로 변경되었고,
 - ② 이후, 2024년 공사계약 체결이 지연('24.4. 무응찰 1회)되어 실제 공사계약이 2024년 12월 18일에 체결됨으로써, 공사 기간이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7년 4월 6일(총 840일)로 재변경되었으며,
 - ③ 위 공사계약 중 1차분 공사계약(140일, 2024. 12. 18.~2025.

5. 6.)이 경기북부지역(연천)의 동절기('24.11.~'25.3.)의 영향으로 공사 착수가 2025년 4월로 지연됨에 따라, 1차분 공사계약의 완료일자는 2025년 9월 23일로, 준공일자는 2027년 8월 24일 (총 공사일은 980일로 140일 증가)로 변경되게 되었음.

<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 계획일정 대비 추진 현황 >

구분	당초 계획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 고 (공사기간 변동)
기본계획	2019.6.~2019.12.	2019.6.~2019.12.	(2023년~2025년)
기본설계	2021.6.~2021.11.	2021.6.~2021.11.	(2023년~2025년)
실시설계	2021.12.~2022.8.	2021.12.~2024.11.	①사업계획성 적정성 재검토 실시 (2024년~2026년)
공사 입찰 및 계약	2024.8.	2024.12.	②공사계약 체결 지연 (2024년~2027.4.6.)
착공	2024.8.→2024.12.	2025.4.	③동절기 공사착수 지연 (2024년~2027.9.23.)
준공	2025.→2026.→ 2027.4.6.→2027.9.23.	-	-

(자료: 국가보훈부)

□ 추정안은, 위 ③ 공사 착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변경 및 공사 진척도를 감안하여, ‘국립연천현충원조성’의 공사비를 2025년도 예산액 284억 8,800만원 대비 97억 2,400만원 감액(△32.4%)하려는 것으로, 기체결된 공사계약의 변경 완료일자('25년 9월 23일) 및 2025년도 공사비 비목의 예산 집행률(0%)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추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공사 계획 일정 및 추정안 집행계획에 비추어 볼 때, 추정안의 공사비만으로 향후 공사 일정을 추진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¹⁴⁾

< 연천현충원조성 사업 2025년도 집행 현황 >

(2025년 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5년				집행률 (B/A)	추경안 (C)	증감 (C-A)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연천현충원조성	30,049	141	30,190	533	1.8	20,325	△9,724
공사비(420-03)	28,488	-	28,263	-	0	18,764	△9,724

(자료: 국가보훈부)

< 연천현충원조성 사업 공사 계획 일정 >

구 분		계획일정	비 고
토목공사	기존건물 철거 등	2025. 5. ~ 2025. 7.	완료
	소하천 이설	2025. 7. ~ 2025. 8.	
	농어촌도로	2025. 8. ~ 2025. 10.	
	토공사	2025. 6 ~ 2026. 3.	
	우수공사	2025. 8. ~2027. 1.	
	포장공사	2026. 10. ~ 2027. 6.	
건축공사	가설공사	2024. 12. ~ 2025. 4.	완료
	골조공사	2025. 9. ~ 2027. 4.	
	마감공사	2026. 2. ~ 2027. 5.	
	조경공사	2026. 6. ~ 2027. 7.	
기타	기계 및 가스 공사	2025. 11. ~ 2027. 8.	
	전기 및 통신 공사	2025. 11. ~ 2027. 8.	

(자료: 국가보훈부)

< 연천현충원조성 사업 공사비 집행계획 >

구분	내용	금액
공사계약	소하천 이설, 부지 조성, 건축물 골조공사 등	120억원
관급자재 구매	옹벽 블록 등 토목기반시설 관련 자재 구매	60억원
기타	기존 시설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등	7.6억원

(자료: 국가보훈부)

14) 다만, 2025년도 5월 말 기준 공사비(420-03) 집행 내역이 없고, 1차분 공사 기간('24.12.~'25.9.)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추경안으로 편성된 공사비의 연내 집행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당초 연천현충원의 조성 목적이 기존 국립서울현충원의 만장에 대비하여 수도권 현충원 안장대상자¹⁵⁾에 대한 안장여력 마련 및 경기 북부 지역의 국립묘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인데, 현 공정율(2025년 6월 20일 기준, 공정율 1.82%), 국립서울현충원의 안장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안장대상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반복되고 있는 준공 연장을 방지하고 계획된 시기에 국립묘지가 조성될 수 있게, 향후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의 안장 여력은 약 2만여기로, 연간 국립서울현충원의 안장 추세로 보았을 때, 2029년부터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현충원 안장대상자를 위한 안장여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립현충원 안장능력 현황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기)

구분		안장능력	안장기수	잔여기수	비고
국립서울현충원	봉안묘	54,810	54,758	52	
	봉안당	53,420	33,402	20,018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묘	100,340	100,159	181	
	봉안당	49,000	5,854	43,146	

(자료: 국가보훈부)

15)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으로 장의 된 사람,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장성급 장교,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소방공무원,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 등

< 국립현충원 연간 안장 신청 건수 및 안장 승인 건수 >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립서울 현충원	신청 건수	2,760	4,087	4,230	3,590
	승인 건수	2,221	3,419	3,585	3,243
	실 안장건수	1,853	3,350	3,747	2,943
국립대전 현충원	신청 건수	3,935	3,166	2,339	2,132
	승인 건수	3,748	3,046	2,269	2,060
	실 안장건수	3,673	2,940	2,430	1,966

(자료: 국가보훈부)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안장되고자 하는 국립묘지의 안장 여력이 부족해질 경우, 해당 국립묘지의 안장이 중지된다는 점에서, 안장 대상자의 예우를 위해서는 국립연천현충원의 조성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편, 재정적 측면에서, 공사의 지연은 공사비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을 발생시키고, 물가변동 등에 따른 총공사비의 증가와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비용 등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게 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적기에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신규)16)

1)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은 장기간 연체된 개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소상공인·취약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4,000억원이 신규 편성됨.

〈202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제2회 추경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 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B)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	-		400,000	400,000	순증

(자료: 금융위원회)

- ☐ 동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이하 “배드뱅크”라 함)가 협약 체결 금융회사의 7년 이상¹⁷⁾ 연체된 5천만원¹⁸⁾ 이하 개인¹⁹⁾ 무담보²⁰⁾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매입 채권에 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채권 전체를 소각하거나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

16)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2432-305)

17) 금융위원회는 ①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 ②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다는 입장임.

18)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 등을 감안한 금액

19)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 및 개인 비사업자(근로자 등)인 경우 모두 포함

20) 담보·보증부 채권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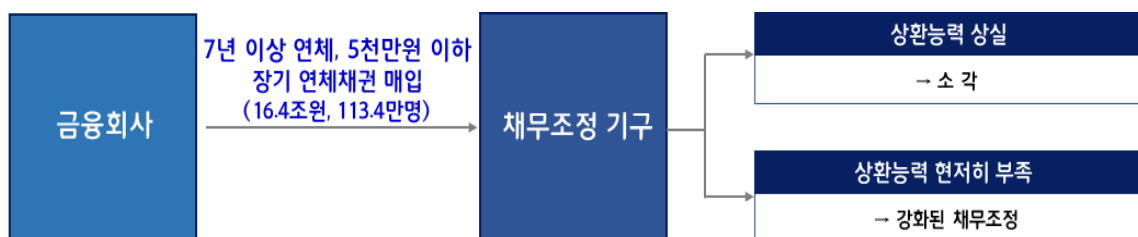
무를 조정해주는 사업임.

- 아직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확정되기 전이나,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①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매입채권을 소각하고, ②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해당 채권을 소각하지는 않되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²¹⁾에 비해 강화된 채무조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임.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권의 전체 규모는 총 16.4조원 규모, 채무자수 기준 약 113만명 정도로 확인되고,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매입가율을 평균 5% 수준²²⁾으로 추산하여 총 매입 소요액은 8,000억원(= 16.4조원 × 5%) 규모로 산출됨.

- 정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부재원 4,000억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하고, 채권 매입에 소요되는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회사의 출연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임.

〈사업 수행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21)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 중 가장 지원 강도가 높은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경우, 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70% 감면(기초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90%), 분할상환기간 최대 8년(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10년)

22)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과 유사한 과거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7년 이상 연체건에 대한 매입가율이 평균 4.00%(신용회복기금)~5.19%(국민행복기금)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균 매입가율을 5%로 책정했다는 입장임.

2) 검토의견

-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 경기침체 문제와 관세전쟁, 디지털 전환 등의 복합위기로 인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자력으로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금융연구원²³⁾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30일 이상 가계대출 연체 차주의 비중은 2.0%(전년 동기 대비 0.3%p 증가)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²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 중 30일 이상 연체 차주의 비중²⁵⁾ 역시 2024년 6월말 기준 2.3%(전년 동기 대비 0.8%p)로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은행²⁶⁾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5년 1분기말 1.88%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장기평균(1.39%)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특히 취약 자영업자²⁷⁾의 대출 연체율(12.24%)이 장기평균(8.35%)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비취약 자영업자(0.46%)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23) 김현열,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와 연체 현황”,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포커스 33-23, 202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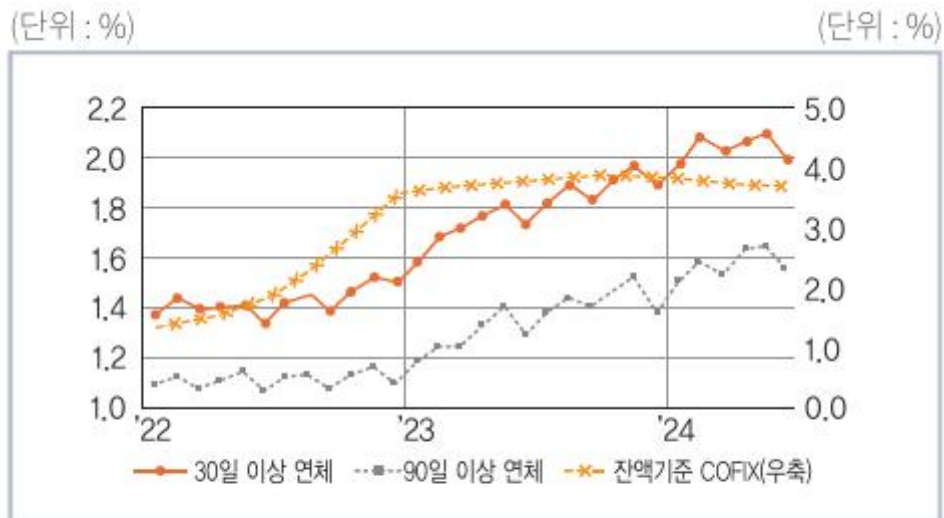
24) 동 시기 90일 이상 가계대출 연체 차주의 비중은 1.6%(전년 동기 대비 0.3%p 증가)

25)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가계대출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상 연체 잔액을 보유한 차주의 비중으로 계산

26)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5. 6., 참고1 자료 참조

27) 다중채무자(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자영업자 차주

〈금리 추이와 가계대출 연체 차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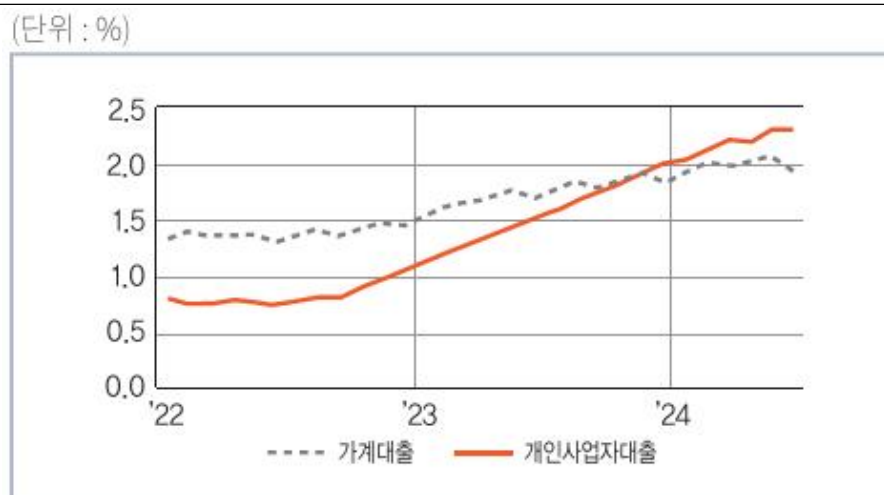
주 : 1) 잔액 기준 COFIX

2) 월말 기준 30일 또는 90일 이상의 가계부채 연체 잔액을 보유한 차주의 비중

자료 : 한국은행, KCB 표본자료를 활용한 자체 추정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차주 비율〉



주 : 1) 가계대출 보유자 중 연체 잔액 보유 차주의 비중(연체 기간 무관)

2)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 중 개인사업자 대출 또는 가계대출 상 연체 잔액 보유 차주의 비중(연체 기간 무관)

자료 : KCB 표본자료를 활용한 자체 추정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 과도한 장기채무를 보유한 연체자들은 신규대출 불가,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금융거래상 심각한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근로활동, 주거 생활에 이르기까지²⁸⁾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곤경에 처한 경우가 다수임.

○ 이에 동 사업은 정부 재원을 마중물로 삼아 장기 연체자 약 113만명에게 채무 탈피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경제활동 참여의 유인을 회복시키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특히 이번 채무조정 사업은 채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배드뱅크에서 자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행정효율성과 정책체감도가 제고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사업의 취지 및 기대효과와 별개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고려 필요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은 장기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소각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는 채무조정 없이 상환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성실상환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음.

○ 지출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채무관리 노력을 통해 채무를 모두 상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무관리 노력 없

28) 강도 높은 추심으로 인한 고통·불안, 급여·주거래 통장 등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 압류에 대한 공포, 제도권 금융 배제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 등

이 채무를 장기간 방치한 채무자의 채무가 탕감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될 수 있음.

○ 나아가 일반적인 파산면책·회생·채무조정 제도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 면제·감면 등에 따른 손실을 오롯이 부담하게 되는 반면, 동 사업과 같이 정부재정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조정에 따른 손실을 납세주체인 일반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임.

○ 따라서 공익적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의적 채무자까지를 포함한 일괄 지원은 여타 사회구성원들의 불만과 비판을 야기할 수 있는바,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채무자의 불필요한 지출 통제 여부, 신용 관리 노력 및 재기 노력 등 개별 채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연체채무에 대한 일괄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 전반에 고의적 연체 및 채무 불이행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 물론 동 사업은 2025년도 추가경정을 통해 일회성으로 추진될 계획이나, 과거에도 유사한 채무 소각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 선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적 경험은 일부 악의적 채무자들에게 향후에도 유사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²⁹⁾.

29) 한국경제신문,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경기 살릴 열쇠? 또 다른 부실의 서막?”, 2025. 6. 2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2079821>)

□ 동 사업은 취약채무자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함과 동시에 금융권 전반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채무조정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완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사례〉

구분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복기금	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새출발기금
운영기간	'04.5월~'20.12월	'08.8월~'13.3월 (행복기금 이관)	'13.3.29~현재 (신규매입은 중단)	'18.2월~19.2월	'20.6월~현재	'22.10월~'26.12월 (신청기간)
매입채권 유형	무담보	무담보	무담보	무담보	무담보	무담보 / 담보
평균 매입가율	한마음 11.7% 희망모아 4.51%	5.02%	5.55%	3.26%	14.9%	무담보 38.63% 담보 84.17% (부실우려) 3개월 미만 ↓ (부실) 3개월 ↑ (20.4월~'24.11월 중 사업 영위한 자)
대상 채권	연체 기간	6개월 ↑ (04.3월 기준)	3개월 ↑ (07.12월 기준)	6개월 ↑ (13.3월 기준)	10년 ↑ (17.9월 기준)	3개월 ↑ (20.2월~25.6월 중)
	기준 금액	5천만원	3천만원	1억원	1,000만원	채무액제한 없음
지원 내용	원금 감면	감면 x	최대 30% * 취약계층 50%	최대 50% * 취약계층 70%	채무 소각	최대 60% 감면 ※ 추심 유보로 적극적 채무조정 x
	분할 상환	8년 분할	8년 분할	10년 분할		10년 분할상환
당초 추정 지원 규모	신용불량자 392만명 144만명 15조원	72만명 102만명 7.5조원	60만명 110만명 10.7조원	76만명 (대상 추정)	2조원 1조원 16만명	40조원+a (채무조정) 9.8조원 (25.5월말 기준)
매입 실적				0.9만명		
지원구조	일괄매입 (한마음 채무자 신청)	일괄매입	일괄매입	채무자 신청	채권금융회사 및 채무자* 신청 * 신복위 탈락/실효자	채무자 신청
참여기관	30개 (한마음 620개)	222개	4,214개	2,668개	3,018개	3,344개
재원	캠코 대여 등 한마음 1,280억원 희망모아 6170억원	금융회사 출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6,970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 (4,542억원) 이관 및 캠코 대여 (3,687억원) 8,229억원	금융회사 출연 등 1,061억원	캠코회계 1,546억원	정부출자 1.71조원* 캠코대여 2.72조원 * 현물출자(05조원)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

(2)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수립 필요

□ 동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본적인 추진방식(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배드뱅크 설립 후 협약기관 보유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 대상 채무(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지원대상(개인 사업자 및 개인 비사업자)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① 재원 마련 방안, ② 협약기관의 범위, ③ 채권 매입 후 소각 및 채무조정 세부요건, ④ 일괄매입 대상에서의 제외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³⁰⁾.

□ 첫째,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 총 8,000억원 중 4,000억원을 이번 추경을 통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예산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며, 금융기관의 구체적인 출연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가 재원 조성에 대한 금융권과의 기초적인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는 입장임.

○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정리 및 취약계층 채기 지원이라는 사회적 공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배드뱅크가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은 상각대상에 가까운 자산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매각대금을 확보하며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으므로, 배드

30)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6월 23일 기준, 금융위원회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도 3분기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뱅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발적으로 출연할 유인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할 것임.

- 그러나 금융기관 등의 협조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4,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참여기관의 범위나 출연금 규모 등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과 유인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둘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할 계획인데, 협약 대상기관의 범위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임.

-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기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급적 많은 기관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나³¹⁾, 실제 협약 체결 여부는 동 사업에 따른 채권매입가율³²⁾, 출연금 부담 규모 등 세부 조건에 따라 기관마다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권별 맞춤형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하는 등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협약체결 대상기관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³³⁾.

31) 참고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관은 총 2,668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참여기관은 총 3,018개, 새출발기금(매입형) 참여기관은 총 3,344개였음(2025년 6월 기준).

32) 채권매입가율은 동 사업의 소요재원 및 사업 효과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바, 업권별·연체기간 등을 고려한 적정 매입가율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33) 다만, 이미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협약대상으로 정할지에 대하여는 사업간 중복, 사업간 연계방안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를 통한 채권 매입 후 관계부처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한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해당 채권의 소각 또는 일부감면(비소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³⁴⁾인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의 채무는 완전 소각을,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비소각)채무조정을 실시할 계획인데, 각각에 대한 세부요건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채권 소각의 요건으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범위 내³⁵⁾에서, 재산기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³⁶⁾의 범위 내에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또한 만일 매입한 장기연체채권 심사 결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채

34)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매입 대상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이어서 대상자의 구체적 상황을 추정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대상 채권 중 소각 비중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35) < 2025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2024. 8. 1. 공표) 및 기본생계비 (단위: 원)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A)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기본생계비(A*60%)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4,838,883	5,393,057

36)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포함시키지 않는 재산을 의미함(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게 되며, 해당 재산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활용되게 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무 수준에 비해 양호할 경우 매입한 채권을 다시 환매할지 여부, 환매 시 적정 환매가율의 수준,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여타 채무자와 동일하게 추심을 중단할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현재 금융위원회는 (비소각)채무조정 대상 매입채권에 대하여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³⁷⁾ 대비 강화된 채무조정을 실시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으나 아직 동 사업에서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정하지 못한 상황인데³⁸⁾, 최근 악화된 경기여건 등 동 사업이 추진된 배경, 새출발기금·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등 현재 운영중인 제도들의 지원요건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구체적인 지원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운영중인 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주요내용 비교〉

구분	국민행복기금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새출발기금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³⁹⁾
매입 기간	매입 종료	'20.6월~'25.6월 (연장추진 中)	'22.10월~'26.12월 (신청 기간)	협의 中
운영 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여 출자*) * '16.9월 캠프 보유 보통주 서금원 전량 이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프회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spc)을 설립하여 출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별도 SPC를 설립하여 출자)
대상 채권	'13.2월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권	'20.2월~'25.6월 중 연체가 발생한 무담보 채권	'20.4월~'24.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가 보유한 담보·무담보 채권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권 (협약체결하여 매입 예정)
개인 /법인	개인	개인	개인사업자 + 법인소상공인	개인

37) 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

38) 2025년 6월 현재 금융위원회는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임.

구분	국민행복기금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새출발기금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³⁹⁾
지원 한도	1억원	-	무담보 : 5억원 담보 : 10억원	5천만원
지원 구조	일괄 매입 및 채무자 신청 매입	일괄 매입 및 채무자 신청* 매입 * 신복위 탈락/실효자	채무자 신청 매입	일괄매입
상환 기간	10년 이내	10년 이내	무담보 : 10년 이내 담보 : 20년 이내	10년 이내
채무 감면	순부채 20~70% 이내 (소외계층 90%)	순부채 40~60% 이내 (소외계층 90%)	(3개월 이상 연체차주가 보유한 무담보 채무 한정) 순부채 60~80% 감면 (사회취약계층 90%)	최대 80% (세부내용 협의 中)
소각	-	-	-	중위소득 60% 이하 채권 소각 (상환능력 별도 심사)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채무조정 확정 후 2년간 성실 상환시 해제	채무조정 확정 후 2년간 성실 상환시 해제	채무조정 확정 후 1년간 성실 상환시 해제	협의 中

(자료: 금융위원회)

□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배드뱅크가 기본 요건(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채무자)을 충족한 채권을 채무자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일단 일괄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한 채권 중 매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채권은 없는지, 또는 매입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채권은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 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재산을 도파·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가

39) 금융위원회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임.

등록된 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채무조정 제한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⁴⁰⁾, 동 사업의 경우에도 별도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업 시행 시점에 채무자가 이미 개인파산·회생 또는 기타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해당 제도에 비해 동 사업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 동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 소멸시효⁴¹⁾가 도과한 채권 역시 매입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40)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채무자
2.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채무자. 다만, 그 기각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 위원회가 정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하 “일반신용관리규약”이라 한다)의 부도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5.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채무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개인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6.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채무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7.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8.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9.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

41) 상거래채권의 경우 5년

(3)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관련 법적 근거 검토 필요

□ 동 사업은 캠코가 출자한 배드뱅크가 금융회사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이후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소득·재산심사 등을 거쳐 해당 채권의 소각 또는 (비소각)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채무구제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득·재산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나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채무자의 신청 또는 동의 등 의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계획임⁴²⁾.

□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배드뱅크가 국세청(소득 등),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지방자치단체(보유 부동산, 차량 등 재산 현황)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식별 가능한 채무자의 신용 관련 정보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상 개인신용정보⁴³⁾에 해당함.

42)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였거나 운영중인 여타 채권매입 프로그램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재산 정보 수집을 위한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였음.

4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1의2. 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

○ 그런데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기

위하여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임.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 절차〉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⑥ 신용정보회사등⁴⁴⁾(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

도 등에 관한 정보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이하 생략)

1의4. 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1의5. 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2.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참고로 법 제32조제6항제9호의4는 예외적으로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드뱅크가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국세청 등으로부터 해당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이 당초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4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배드뱅크를 포함)

□ 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배드뱅크에서 수집·활용하는 것은 일견 채무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 취지로 볼 수도 있으나, 현행 「신용정보법」상 명시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⁴⁵⁾, 나아가 신용정보주체인 채무자의 신용정보 자기결정권에도 저촉되는 측면이 있음.

○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금융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보로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는바,

현행 「신용정보법」 제32조제6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적 요건들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공유받는 경우 또는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긴급한 상황인 경우 등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일괄적인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신속한 채무구제의 필요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관련 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5)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이 채무자 본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이러한 심사 결과 채무자의 은닉 재산 등이 발견되어 채무조정 없이 해당 채권이 기존 협약기관에게 환매되거나, 연체정보 등록 최장기간(7년)이 도과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채무조정 관련 정보가 등록되는 등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존재함.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소득·재산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배드뱅크가 수집·처리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프로그램 특성상 차주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상환능력 심사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차주의 사전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상 별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⁴⁶⁾.

2.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⁴⁷⁾

1)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은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감면, 원금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본예산(5,000억원) 대비 7,000억원(140%) 증가한 1조 2,000억원이 편성됨.

〈202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사업 추경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 예산	제1회 추경안(A)	제2회 추경안(B)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330,000	500,000	500,000	1,200,000	700,000	140.0

(자료: 금융위원회)

46) 금융위원회는 3분기 내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배드뱅크가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 사전동의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47) 세부사업: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2432-303)

□ 동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2022년 제2회 추경안을 통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하였거나 곧 발생할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사업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새출발기금’을 신설하였음.

□ 동 사업의 채무조정 방식은 두 가지인데, ① 부실차주⁴⁸⁾의 신용·보증 채무는 ‘매입형’(원금 감면) 방식을, ② 부실차주의 담보채무 및 부실우려차주⁴⁹⁾에 대하여는 ‘중개형’(금리 인하) 방식을 적용함.

‘매입형’은 새출발기금이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⁵⁰⁾을 매입하고, 대출채권을 매입한 새출발기금이 채권자 지위에서 순부채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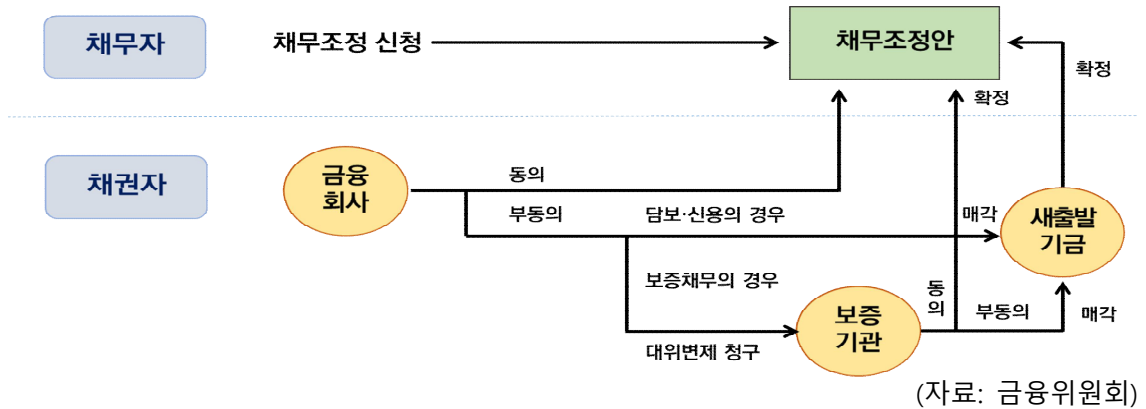
‘중개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동의 하에 금리 인하를 약정하는 방식인데, 채권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 참여하게 됨.

48)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차주

49) 단기(3개월 미만) 연체자,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

50)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이며, ①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과 ② 채무조정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불가. 단,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총 채무 30% 이하의 신규대출이나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가능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 2025년 5월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 현황을 보면, 총 약정 체결 채무액은 6조 872억원인데, 매입형의 경우 원금의 평균 70%, 이자의 100%가 감면되었으며, 중개형의 경우에는 평균 4.7%p의 금리가 인하된 것으로 보임.

〈새출발기금 신청 및 채무조정 약정 현황〉

(2025년 5월 기준, 단위: 명, 억원)

구 분	신청		약정체결		
	신청자	채무액	약정자	채무액	평균 감면율
매입형	131,002	211,756	35,331	31,449	70%(원금) 100%(이자)
중개형			39,895	29,423	4.7%p(금리)
합 계			75,226	60,872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내수회복 지원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 ① 90% 원금감면 대상을 확대(취약계층 → 취약계층·저소득층)하고, ② 지

원대상 사업기간을 연장(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함으로써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임.

- 세부적으로 보면, 종전에 60~80%까지만 채무를 감면하던 순부채(부채-재산가액) 상태의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⁵¹⁾⁵²⁾인 저소득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무담보채무’에 대해 그 채무액의 90%를 일괄 감면하며,

지원대상 사업기간을 종전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로 확대함으로써 2025년 6월에 신규 창업한 사업자까지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을 통한 정책수혜 인원을 10만 1,000여명으로, 이들의 채무액은 6.2조원으로 추산하였으며, 제도개선에 따른 새출발기금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경안에 총 7,00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음.

51) 2025년도 4인가구 기준 월 365만 8,664원

52) ‘중위소득 60%’는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기준에 따른 것임.

참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다목에서는 ‘가용소득’의 산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제2항에서는 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2025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2024. 8. 1. 공표) 및 기본생계비 (단위: 원)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A)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기본생계비(A*60%)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4,838,883	5,393,057

〈추경안에 따른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안)〉

개선내용	①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 대상 :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 내용 : (현재)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상환 (개선) 90% 감면, 최대 20년 분할상환
	② 지원대상 확대 - (현재) 2020년 4월~2024년 11월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자 - (개선) 2020년 4월~2025년 6월 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자
수혜규모	10.1만명 (채무 6.2조원)
추경예산안	0.7조원 (제도개선에 따른 추가 손실보전)

(자료: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설치 시에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의 채권 매입 비용 중 예상되는 손실분 만큼을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채무조정 대상 및 감면 폭을 확대한 동 추경안이 반영될 경우 국가 재정 부담분은 종전 4.01조원에서 4.48조원으로 증가함.

국가 재정 부담분은 출자 방식으로 집행되는데, 새출발기금에 대해 2025년 5월 현재 총 2조 2,100억원의 출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추경안이 반영될 경우 2025년 말까지 총 2조 9,100억원의 출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새출발기금 자원 계획 변화〉

구 분	종전	2024년 9월 계획변경	추경안
부실채권 매입규모	30조원	33.4조원	좌동
채권매입 소요자원	18조원 = 30조원×60%(매입가율)	13.6조원 = 33.4조원×40.7%(매입가율)	좌동
국가재정 부담분 (출자)	3.6조원 = 18조원×20%(부도율)	4.01조원 = 13.6조원×29.5%(부도율)	4.48조원 = 13.6조원×33%(부도율)
공사 부담분 (공사채)	14.4조원 = 18조원-정부출자금	9.59조원 = 13.6조원-정부출자금	9.12조원 = 13.6조원-정부출자금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새출발기금 관련 출자 및 공사채 발행 규모〉

(2025. 5.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추경안
출자(예산)	11,000*	2,800	3,300	5,000	22,100	7,000
공사채발행	-	3,600	15,600	8,000	27,200	
합 계	11,000	6,400	18,900	13,000	49,300	

* 현물출자 5,000억원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2) 검토의견

(1) 새출발기금 설치 취지 및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할 필요

-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원대상 등을 확대해 왔으며, 금번 추경안에는 ① 90% 원금감면 대상 확대(취약계층 → 취약계층·저소득층) 및 ② 지원대상 사업기간 연장(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음.

〈새출발기금 사업계획 변경 현황〉

	종전	2024년 9월 계획변경	2025년 3월 계획변경	추경안
지원 대상	2020. 4.-2023. 11.	2020. 4.-2024. 6.	2020. 4.-2024. 11.	2020. 4.-2025. 6.
신청 기간	위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채무 감면	2025. 10.까지	2026. 12.까지		
대상 채무	순부채의 60~80%, (취약계층은 90%까지)	취업·재창업 교육이수 시 최대 10%p상향 저소득층(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은 90% 일괄 감면		
제외 채무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로서 최대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 무담보대출 5억원) 영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등			
만기 연장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및 대환대출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단, 부실차주의 총채무 30%이하 신규대출은 가능	단, 모든 차주의 총채무 30%이하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최대 1년 거치(부동산담보는 3년), 최대 10년 분할상환(부동산담보는 20년)			저소득층은 최대 20년 분할상환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 추경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및 감면 폭 확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좀처럼 내수가 회복되지 않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가 증가하고 그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과감한 채무조정이 실질적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채무조정 지원대상에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없는 최근 창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새출발기금을 설치한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 등이 있음에도 2022년도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 채무조정 사업을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시책 준수를 위해 손실을 감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따라서,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없는 최근 신규 창업자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새출발기금을 설치한 당초 취지⁵³⁾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⁵⁴⁾

53)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제2회 추경안 설명자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잠재부실 관리 및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통한 정상영업 회복 및 재기지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SPC(특수목적법인)인 새출발기금을 설치한 것임.

54)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높은 초기 폐업률(1년내 폐업률 22.1%, 2023년 기준) 등을 감안 시 신규 창업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임.

- 둘째, 반복적인 채무조정 확대로 인해 정책 수혜층의 도덕적 해이와 추가 채무조정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형성될 우려가 있음.

금융위원회는 여러차례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등을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새출발기금은 현재 보유한 채무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신청일(2026년 12월말 신청 마감) 6개월 이전의 미래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대환대출이나 총 채무액 30% 이내일 경우에는 그 신청일 직전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도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확대 현황〉

	종전	2024년 9월 계획변경	2025년 3월 계획변경	추경안
지원 대상	2020. 4.-2023. 11.	2020. 4.-2024. 6.	2020. 4.-2024. 11.	2020. 4.-2025. 6.
	위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신청 기간	2025. 10.까지	2026. 12.까지		
제외 채무	영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등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및 대환대출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신규대출 (대환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단, 부실차주의 총채무 30%이하 신규대출은 가능	단, 모든 차주의 총채무 30%이하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금융위원회의 지원대상 확대안에 따를 경우, 2020년 4월~2025년 6월 기간 중 계속 사업자뿐만 아니라 2025년 6월에 창업한 사업자도 채무조정 신청 마감일인 2026년 12월 31일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거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영업 관련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 되며, 2026년 7월 이후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도 대환대출이나 총 채무액 30% 이내의 영업 관련 채무라면 함께 조정받을 수 있게 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포함되는 ‘최대’ 채무 범위〉

2026. 6. 이전에 발생한 영업관련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2026.7.부터 2026.12.이전의 대환대출 및 총채무 30% 이내의 영업관련 신규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범위		
↑ 2025. 6. (창업)	↑ 2026. 6. (신청일 6개월전)	↑ 2026. 12. (신청마감일)

이와 같이, 미래의 채무⁵⁵⁾까지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새출발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추가 채무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가 형성된다면 재정적 능력 대비 투자 규모가 커져 부실의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채무조정 대상 확대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코로나19 피해 사업주를 지원하고자 했던 새출발기금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도덕적 해이와 채무조정에 대한 과도한 기대 형성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55) 현재부터 채무조정 신청일(신청마감: 2026. 12.) 6개월 이전에 추가로 발생하는 채무 + 채무조정 신청일 6개월 이내의 채무 중 대환대출이나 총채무 30%이내의 신규대출

(2) 채무조정 약정체결 소요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 새출발기금은 사업 시행 이후 2025년 5월까지 총 9조 8,020억원의 채권을 매입했지만, 이 중 새출발기금과 채무자 간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 금액은 총 4조 1,116억원(42%)에 불과함.

〈새출발기금 채권매입 및 채무조정약정 현황〉

(2025. 5. 기준, 단위: 명, 억원)

구분	매입채권			매입채권 중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수	채권액	매입액	채무자수	조정전금액	조정후금액
합 계	114,461	98,020	43,328	50,461	41,116	19,000
매입형 (원금 감면방식)	72,568	66,278	19,113	35,331	31,449	9,333
중개형 (금리 인하방식)	41,893	31,742	24,215	15,130	9,667	9,667*

* 채권금융회사 부동의로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한 채권액

※ 중개형 약정 체결 후, 실효된 차주는 원금감면방식, 금리인하방식에 중복(단, 채권액은 인수시점 기준 차주 성격 반영)

(자료: 금융위원회)

- ☐ 이와 같이 매입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약정체결 실적이 부진한 주요 원인은 채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재산 조사, 채권 양·수도, 채무조정에 대한 채무자 동의여부 회신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임.

- ☐ 실제로, 2024년도 원금 감면방식 채무조정의 평균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채무조정 신청부터 채권매입까지 평균 110일이 소요되고, 매입한 채권과 관련해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하기까지 다시 평균 73일이 걸려, 최종적으로는 채무조정 신청부터 약정까지 평균 183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2024년도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 평균 소요기간〉

구분	채무조정 신청일 ~ 채권매입일	채무조정 신청일 ~ 채무조정 약정일
매입형 (원금 감면방식)	110.2일*	183.3일*

* 2024년도에 매입한 채권 기준이며, 채권기관 및 채무자 협조 시 최소 3~4개월 소요되며, 보증 부채권의 경우 대위변제 절차 등에 따라 추가 3~4개월 소요

(자료: 금융위원회)

□ 원금 감면방식의 채무조정을 받은 사업자는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야만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되어 신용회복이 가능한데, 2024년도의 채무조정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채무조정 신청부터 신용회복까지 평균 1년 6개월(약정체결 6개월, 성실상환 1년)이 소요됨.

□ 금융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채무조정 대상 및 감면 폭을 확대함으로써 총 10.1만명의 정책대상을 추가한다는 계획인데,

채무조정 신청부터 약정체결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정책 수혜대상을 다시 10.1만명 늘리는 것은 기존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신용회복 시점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신용회복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조정 약정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3.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⁵⁶⁾

1)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을 무료로 지원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은 본 예산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액된 15억 5,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제2회 추경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증감 (B-A)	(B-A)/A
		본 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B)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255	1,205	1,205	1,559	354	29.4

(자료: 금융위원회)

- 동 사업은 크게 ① 불법추심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채무자(또는 관계인)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거나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대리인 선임” 사업과 ②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 수행을 위한 “부수사건 소송대리” 사업으로 구분됨.

○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⁵⁷⁾에 따

56) 세부사업: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1833-301)

5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아닌 대리인에게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도에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등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음.

- 채무자는 대리인 선임 시 대부계약·추심행위에 대한 불법성 검토를 포함하여 변호사 등 대리인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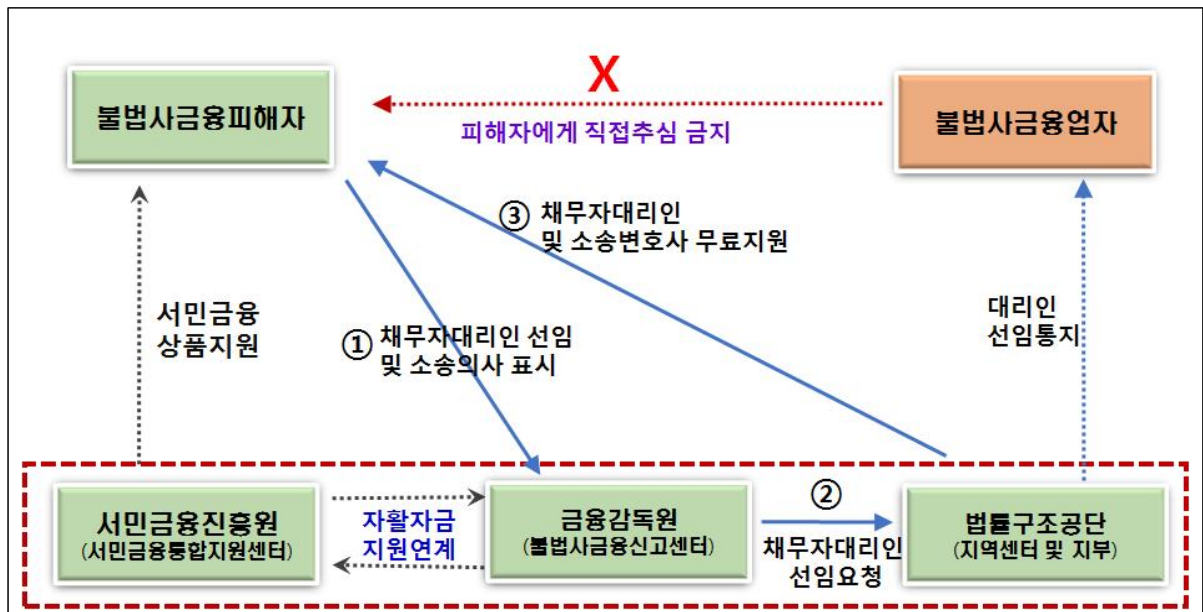
○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하기 쉽지 않으므로, 정부는 2020년부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음.

- 2024년 7월부터는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에 대해서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체계〉



(자료: 금융위원회)

-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대리인 선임” 사업과 함께, 채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불법추심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 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는 “부수사건 소송대리”도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해오고 있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 산출근거〉

구 분		산출내역	
		본예산(1,205백만원)	제2회 추경안(1,559백만원) (+354백만원)
대리인 선임	본인	772백만원=3,711건*×208천원** * 연평균 신청건수 ** 변호사보수(200천원)+송달료(8천원)	1,126백만원=5,411건×208천원 <1,700건 추가 지원>
	관계인 58)	319백만원=4,560건*×70천원** * 연평균 지원인원(950명) x 채무자 1인당 관계인 4.8명 추정 ** 파산·회생 관련 보전사건 등 변호사보수 최저단가	
부수사건 소송대리 홍보비		14백만원=28건*×497천원** * 연평균 구조건수 ** 연평균 구조단가	
		100백만원	

- 구체적으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또는 소송 의사를 표시하면,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또는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면, 금융위원회가 공단에 소요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대리인 선임” 사업의 경우 채무자등의 소득 등과 관계 없이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부수사건 소송대리” 사업의 경우 1인 중위소득 125%⁵⁹⁾ 이하가 지원 대상임.

2) 검토의견: 취약채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방안 검토 필요

- 불법추심,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부계약 등 불법사금융은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로서,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적발·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여전히 불법사금융 관련 민원상담·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음.

〈최근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접수 현황〉

(단위: 건)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8,043	9,918	10,913	13,751	15,397
법률구조공단	339	305	469	475	371

(자료: 금융위원회)

58)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관계인 신청건수가 계획 대비 저조하여 해당 예산을 채무자 본인의 대리인 선임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임.

59) 2025년 기준 약 299만원

○ 나아가 2025년 7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반사회적 대부계약⁶⁰⁾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 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당사자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5월말 기준 대리인 선임 지원건수가 3천건에 이르러 월 평균 600건 수준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바, 연말까지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연말까지 7,200여건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므로 이를 감안할 때 1,700건⁶¹⁾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최근의 경제 상황 및 불법사금융 관련 규제 강화에 따라 불법사금융 관련 분쟁이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불법사금융 이용 채무자들의 연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집행 추이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도 편성된 12억 5,500만원 중 6억 2,800만원만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교부되었고, 교부된 금

60) ①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가 있거나, ②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61)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안 중 홍보비(1억원)를 제외한 예산액을 모두 채무자(본인) 대리인 선임 지원에 활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약 5,500건 지원 가능

액 중 실제로 사업에 활용된 금액은 5억 7,100만원에 불과하여 실집행률이 45.5%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억원)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8.86	12.55	12.05
집행액	8.86	6.28	9.04
실집행액	8.86	5.71	5.29

(자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① 불법추심의 양상 다변화 등으로 인한 신청요건 불비 문제⁶²⁾, ② 신청창구 부족, 전담인력 미비 등 행정적 요인 ③ 홍보예산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화번호 특정이 어렵더라도 SNS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⁶³⁾, 신청창구를 확대하고 금융감독원 내 전담직원을 충원 하였으며⁶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홍보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25년도 상반기부터는 집행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음.

62) 기존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요청하기 위하여는 선임 사실 통지를 위하여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요건화하고 있었으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본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추심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해 신청요건 불비로 접수가 취하되는 사례가 많았음.

※ 접수 후 취하 건수(금감원, 건): (2021년) 619 → (2022년) 962 → (2023년) 1,324 → (2024년) 2,677

63) 2024년 11월

64) (창구 확대) 기존에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유선·인터넷·방문접수)하였으나, 이를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사이트(2024년 12월 개설),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2026년 1월 개설 예정)까지 확대함.

(인력 충원) 금융감독원 내 전담직원 충원(1명→3명, 2025년 5월)

□ 그러나 「20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이용자 대상 실태조사」⁶⁵⁾에 따르면 동 사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⁶⁶⁾ 중 47.9%만이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된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이 사라졌음”이라고 응답하였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⁶⁷⁾ 중 56.8%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 이후 불법추심행위가 계속될 경우 제재조치가 미흡함”, 45.5%가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음”이라고 응답한 것이 확인됨.

- 신청요건 완화, 신청창구 확대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채무자의 수요에 적시 대응하여 예산 집행률을 개선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동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취약채무자의 법률대응권 보장 및 불법사금융 예방에 있음.
-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집행률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외에도, 동 사업이 단순 대리인 선임 통지에 그치지 않고 경찰, 금융당국 등과 신속히 연계·대응하여 취약채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 정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5) 금융위원회(갤럽 위탁 설문조사 수행), 2024. 10.

66) 전체 응답자 중 73.3%

67) 전체 응답자 중 26.7%

V. 대체토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국가보훈부 소관 추경예산안 중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사업 등 3개 사업을 증액하고,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참전명예수당 등 6개 사업을 증액 의결하며,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함.
-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중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을 증액 의결하고, 총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함.
-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업 1건(종합상담창구운영)을 3억 9,900만원 증액 의결함.

VII. 찬반토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VIII. 심사결과

1. 국가보훈부 소관

가. 일반회계 : 수정 의결

2. 금융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수정 의결

3.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수정 의결

IX.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X. 부대의견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광복회 학술원의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이 연내에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수행 상황 점검을 철저히 한다.
-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의 독립운동사 출간 언어 구성에 일본어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재일동포 및 일본 내 역사왜곡 대응과 학술교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정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지역별 이용대상자 현황, 진료비 단가 상승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보훈병원 진료’ 사업의 예산 추계의 구체적 합리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본예산 편성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진료’ 사업에서 운영비율과 가동률을 반영한 병상 확대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 확보와 연계된 지역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진료’ 사업 중 차세대 HIS 구축사업의 추진성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율, 환자 편의 지표, 비용 절감 효과 등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외부 점검 체계를 도입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 지역별 이용대상자 현황, 진료비 단가 상승, 위탁병원 지정 확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위탁병원 진료’ 사업의 진료비 예산 추계의 구체적 합리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본예산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예측·검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12개 국립묘지의 시설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기간이 긴 공사, 사전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공사들에 대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제때 선행되어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명절 기간 공사로 인한 방문자의 불편이 없도록 유의한다.
- 국가보훈부는 12개 국립묘지의 시설보수 공사의 연내 집행을 신속히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12개 국립묘지에 대한 안전 및 노후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연천현충원 조성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인다.
- 국가보훈부는 민생회복이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조정 약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채권매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사업 확대와 관련해, 민간의 손실 부담을 정부가 사실상 떠안는 구조를 강화하는 점,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행정적 준비가 미비한 점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4,000억원 규모 금융권 출연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협약기관의 범위, 채권 매입 후 소각 및 채무조정 세부요건, 도박·유형 채무 등 지원 제외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한 채권 중 처리되지 않은 채권 역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반영한다.
-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과 새출발기금 사업

간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대부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 등 유인방안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고의적 연체 및 채무 불이행 등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채무자 소득·재산 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현실화한다.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채무조정과는 달리 재정투입을 통한 채무 전액탕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고,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금융권 협조 4,000억원 규모 등)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융자산 심사를 위한 법적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예산의 추경안 반영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만약 동 예산이 추경을 통해 반영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동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1.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과 새출발기금 사업 간 지원 사각

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2.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소득·재산 심사 기준 및 고의적인 연체 및 채무 불이행 방지 대책
 3.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경우, 법적 근거를 명확히 갖출 것
 4.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권 재원조달계획
 5. 재정 투입 방안 외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업권별 자체 프로그램 실행 방안
 6.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장기연체채권 직접 소각 확대를 통한 공적 자금 절감 방안
 7. 외국인 장기연체채권 대상자에 대한 국적별 통계 관리 체계 구축 및 비자 유형, 채무, 체류 자격 등 기준의 명확화
 8. 도박빚 등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채무의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을 제고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본래 목적인 취약채무자 법률대응권 보장 및 불법 사금융 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 금융당국과의 지체 없는 연계 등 대리인 선임 이후 사후관리체계 방안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사업구조 재설계를 검토하는 등 현재 50%가 넘는 동 사업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한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체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사업의 재원 중 은행권 기부가 올해로 종료되므로,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소요 재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첨부 : 2025년도 제2회 정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 첨부 】

2025년도 제2회 정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정내역

2025. 7.

I. 정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해당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일반회계	60,218	35	60,183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50	-	50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회계	399	-	399
	합 계		60,667	35	60,632

II. 정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가. 국가보훈부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1	무공영예수당 (1133-306)	46,117	-	46,117	48,363	2,246	○ 동 사업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매월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려는 사업임. ○ 무공영예수당 월 지급액 인상(월 5만원 인상)을 위하여 22억 4,600만원 증액 * (산출근거) 7,488명×50천원×6월=2,246백만원	
2	참전명예수당 (1133-307)	586,966	-	586,966	619,552	32,586	○ 동 사업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려는 사업임. ○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인상(월 5만원 인상)을 위하여 325억 8,600만원 증액 * (산출근거) 108,621명×50천원×6월=32,586백만원	
3	4·19혁명공로수당 (1133-308)	1,438	-	1,438	1,516	78	○ 동 사업은 419혁명에 참여하여 그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은 419혁명공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사업임. ○ 4·19혁명수당 월 지급액 인상(월 5만원 인상)을 위하여 7,800만원 증액 * (산출근거) 260명×50천원×6월=78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4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등 (1238-315)	34,281	800	35,081	39,290	△35	○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운영’은 광복회 등 16개 보훈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은 보훈단체별 애국선양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광복회 학술원의 상근근로자 인건비 반영을 위해, 광복회 학술원의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비 3,500만원 감액	※ 광복회 학술원 인건비 증액 연계
						2,596	○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운영’은 광복회 등 16개 보훈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보훈단체 운영 현실화(근로자 최저시급 보장)를 위한 인건비 25억 9,600만원 증액	
						1,310	○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은 보훈단체별 애국 선양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호국영웅보훈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13억 1,000만원 증액	
						300	○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은 보훈단체별 애국 선양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월남전 참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 지원을 위해 3억원 증액	
						38	○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운영’은 광복회 등 16개 보훈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내역사업인 ‘보훈단체선양활동등’은 보훈단체별 애국선양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광복회 학술원의 상근근로자 인건비 반영을 위해 3,800만원 증액	※ 광복회 학술원 사업비 감액 연계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5	보훈병원진료 (2150-365)	392,296	49,842	442,138	448,863	6,725	○ 동 사업은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임. ○ 2025년 진료비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부족분 충당을 위해 67억 2,500만원 증액	
6	위탁병원진료 (2150-366)	249,113	34,573	283,686	292,513	8,827	○ 동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국가에서 민간의료 기관에 위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를 보전하는 사업임. ○ 2025년 진료비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부족분 충당을 위해 88억 2,700만원 증액	
7	독립운동관련 사업등지원 (3147-413)	1,745	-	1,745	1,953	208	○ 동 사업은 국내·외 독립기념행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임. ○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개최를 위해 2억 800만원 증액	
8	광복80주년 기념사업 (3147-419)	8,689	-	8,689	9,493	504	○ 동 사업은 광복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려는 사업임. ○ 광복80주년 기념 연극 4회 공연을 위해 5억 400만원 증액	
						300	○ 동 사업은 광복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려는 사업임. ○ ‘(가칭)한국독립운동사대회’ 개최를 위해 3억원 증액	
9	제대군인전직지원금 (4160-391)	7,382	-	7,382	11,882	4,500	○ 동 사업은 전역한 연금비대상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임. ○ 2025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45억원 증액	

나. 금융위원회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 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1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833-301)	1,205	354	1,559	1,609	50	○ 동 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홍보비 5천만원 증액	

다. 국민권익위원회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제1회추경 (A)	증감액 (B)	제2회추경안 (C=A+B)				
1	종합상담창구운영 (1134-341)	9,526	-	9,526	9,925	399	○ 내역사업인 ‘국민콜110 운영’은 국민이 정부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구축한 정부 대표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임. ○ 국민콜110 상담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분 3억 9,900만원 증액	

Ⅲ. 정무위원회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Ⅳ. 부대의견

가.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광복회 학술원의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이 연내에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수행 상황 점검을 철저히 한다.
-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사업의 독립운동사 출간 언어 구성에 일본어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재일동포 및 일본 내 역사왜곡 대응과 학술교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정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지역별 이용대상자 현황, 진료비 단가 상승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보훈병원 진료’ 사업의 예산 추계의 구체적 합리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본예산 편성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진료’ 사업에서 운영비율과 가동률을 반영한 병상 확대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 확보와 연계된 지역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 진료’ 사업 중 차세대 HIS 구축사업의 추진성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율, 환자 편익 지표, 비용 절감 효과 등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외부 점검 체계를 도입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 지역별 이용대상자 현황, 진료비 단가 상승, 위탁병원 지정 확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위탁병원 진료’ 사업의 진료비 예산 추계의 구체적 합리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본예산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예측·검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12개 국립묘지의 시설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기간이 긴 공사, 사전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공사들에 대해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제때 선행되어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명절 기간 공사로 인한 방문자의 불편이 없도록 유의한다.
- 국가보훈부는 12개 국립묘지의 시설보수 공사의 연내 집행을 신속히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국가보훈부는 12개 국립묘지에 대한 안전 및 노후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2026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국가보훈부는 연천현충원 조성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인다.
- 국가보훈부는 민생회복이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조정 약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채권매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사업 확대와 관련해, 민간의 손실 부담을 정부가 사실상 떠안는 구조를 강화하는 점,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행정적 준비가 미비한 점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의 새출발기금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4,000억원 규모 금융권 출연 등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협약기관의 범위, 채권 매입 후 소각 및 채무조정 세부요건, 도박·유형 채무 등 지원 제외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매입한 채권 중 처리되지 않은 채권 역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반영한다.
-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과 새출발기금 사업 간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대부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인센티브 등 유인 방안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기준 마련을 통해 고의적 연체 및 채무 불이행 등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시 채무자 소득·재산 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현실화한다.
-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채무조정과는 달리 재정 투입을 통한 채무 전액탕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고,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금융권 협조 4,000억원 규모 등)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금융자산 심사를 위한 법적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예산의 추경안 반영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만약 동 예산이 추경을 통해 반영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동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소위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1.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과 새출발기금 사업 간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2.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소득·재산 심사기준 및 고의적인 연체 및 채무 불이행 방지 대책
 3.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채무자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활용할 경우, 법적 근거를 명확히 갖출 것
 4.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권 재원조달계획
 5. 재정 투입 방안 외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업권별 자체 프로그램 실행 방안
 6.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장기연체채권 직접 소각 확대를 통한 공적자금 절감 방안
 7. 외국인 장기연체채권 대상자에 대한 국적별 통계 관리 체계 구축 및 비자 유형, 채무, 체류 자격 등 기준의 명확화
 8. 도박빚 등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채무의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을 제고뿐만 아니라 동 사업의 본래 목적인 취약채무자 법률대응권 보장 및 불법사금융 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 금융당국과의 지체없는 연계 등 대리인 선임 이후 사후관리체계 방안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사업의 사업구조 재설계를 검토하는 등 현재 50%가 넘는 동 사업

대위변제율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한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체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사업의 재원 중 은행권 기부가 올해로 종료되므로, 금융위원회는 동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소요 재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